출생신고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시정촌의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국내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외에 태어난 아이의 특별영주허가신청이나 재류자격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본국정부에도 보고하십시오. 절차에 관해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특별영주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시민과(주민기록 담당)로 문의해 주십시오.
- ※「재류자격의 취득」에 대해서는 5「새로운 체류관리제도」를 참조하십시오.
- (1) 신고기간 : 출생일을 포함시켜서 14 일간
- (2) 신고하는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3) 신고처 : 태어난 곳 또는 주소가 있는 곳, 또는 본적이 있는 시구정촌의 사무소(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니시노미야시에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호적 담당

0798-35-3128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주민기록 담당

0798-35-3104

또는 각 지소(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센터(토·일·공휴일 제외),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주민기록의 경우 토·일·공휴일 제외)

(4) 필요서류:

- ① 출생신고서(병원 등에서 교부됩니다. 출생증명서와 동일양식)
- ②출생증명서(출산했을 때,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을 받은것)
- ③모자건강수첩(임신을 알았을 때,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임신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는 수첩입니다」
- ④ 부모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외국인부부인 경우)
- ⑤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부부인 경우)
- ⑥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해당)
- ※주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서비스종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